

정보통신망법 시행(2016. 6. 2.)에 따른 수정

[1] pp.398-399: <5. 개인정보의 파기> 중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정통29조2항, 6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정통16조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정통16조3항).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정통76조1항4호, 67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불이용 기간(1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정통39조3항, 6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불이용 기간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정통16조4항).

[2] pp.401-402: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중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정통19조47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정보

2 정보통신망법 시행(2016. 6. 2)에 따른 수정

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정통47조 4항).

전기통신사업자^(전기2조 8호)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정통47조 2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정통76조 1항 6의3호).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③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정통47조 3항).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정통47조 5항).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정통47조 9항 52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정통76조 3항 7호).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정통47조 51항). 이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급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정통47조의53항, 영55조의4 및 52조).